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고령경찰서 국·공유재산 교환 협약(MOU) 체결 동의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고령경찰서 국·공유재산 교환 협약(MOU) 체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고령경찰서 대가야지구대·성산파출소와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
예정 인근 부지 교환을 통해 대가야읍 중심 원스톱(ONE-STOP)행정
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환 상생협력 협약식 추진계획

1 협약식 개요

- (협 약 명) 국·공유재산 교환 상생협력 협약(MOU)
- (일 시) 2024. 12월~2025. 1월 중(예정)
- (장 소) 군수실(티타임), 가야금방(협약식)
- (협약기관) 고령군 ↔ 고령경찰서
- (참 석)
 - 고령군 : 군수, 재무과장, 재산관리팀장 등
 - 경찰서 : 경찰서장, 경무과장, 경리팀장 등

2 시간계획

시간계획		주요내용	비고
14:00~14:10	10'	· 협약 전 환담 (티타임)	군수실
14:10~14:13	3'	· 개회 및 국민의례	가야금방 진행 : 재산관리팀장
14:13~14:15	2'	· 참석자 소개	사회자
14:15~14:25	10'	· 양기관 대표 인사말씀	고령군수 고령경찰서장
14:25~14:30	5'	· 협약내용 설명	사회자
14:30~14:35	5'	· 교환협약서 서명, 교환 및 기념촬영	고령군수 고령경찰서장

교 환 협 의 서

당사자 중 국가(고령경찰서)를 '갑'이라 하고 경북 고령군을 '을'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, 건물에 대하여 다음 조항과 같이 토지, 건물 교환 협약을 체결 한다

물건의 표시	
갑의 물건	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3-5, 대지 249.7㎡, 그 지상 건물1 (연면적 : 168.18㎡)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30-12, 대지 755㎡, 그 지상 건물1 (연면적 : 125.85㎡)
을의 물건	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200-1, 답 1,155㎡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 200-5, 답 521㎡

제 1조 (협약의 목적)

본 협약은 갑과 을간에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호 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교환의 방식)

갑과 을은 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에 대하여 현물교환의 형식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평가금액의 차액은 교환계약 체결 후 감정평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.

제 3조 (평가액의 결정)

평가금액은 갑과 을이 각자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되,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의 평가금액이 10%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.

제 4조 (권리 및 부담의 제거)

갑과 을은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.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.

제 5조 (토지사용승낙과 부동산 무상사용허가)

본 협약서 체결 후에 갑은 을에게 을의 물건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고 을은 갑의 파출소 신축에 협조한다.

갑의 파출소 신축이 완료, 입주시 까지 기존 파출소 부동산을 무상 사용한다

제 6조 (교환계약의 체결)

갑의 물건과 을의 물건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 물건을 인도한다.

제 7조 (비용의 부담)

갑과 을은 인도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제 8조 (교환차액의 결제)

①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②갑의 물건상의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은 감정평가에 반영하여 감정 의뢰한다.

제 9조 (협약의 이행 등)

①갑과 을은 본 협약서에 의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협력·협조하여야 한다.

②본 협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 위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24년 월 일



고 령 경 찰 서
서 장 안 중 만

서명



고 령 군
군 수 이 남 철

서명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령군 재무과	
연 락 처	054-950-6151